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

2024. 9월

금 융 위 원 회 가 계 금 융 과

목 차

│. 추진배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□. 대부업 및 불사금 현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Ⅲ. 개선방향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IV. 세부방안6
1. 불법사금융 인식 제고 6
2. 온라인 대부중개업 제도개선8
3. 지자체 대부업 제도개선10
4. 불법대부 제재·처벌 강화 ······ 12
5. 불법대부 피해구제 강화 13
6. 대부업 규제 합리화 15

I. 추진배경

- □ 고금리,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·취약계층의 어려움*으로 불법사금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** 추세
 - * (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) ('22.12말) 42.3조 → (<u>'23.12말) 41.7조(△1.4%</u>)
 ** (금감원 불사금 피해상담·신고) ('22년) 10,350건 → **('23년) 12,884건**(+24.5%)
 - 정부는 「불법사금융 척결 TF」를 통해 수사·단속을 강화하고, 서민·취약계층 자금공급 확대*, 채무자보호** 등 다각도로 대응중
 - * 정책서민금융 공급 : ('22년) 9.8조 → ('23년) 10.6조 → ('24년) 10조원 이상 **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확대('24.7월~),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('24.10월~) 등
- □ 그러나 최근에도 **고금리 대출, 불법추심** 등이 지속되고 있고, 특히 온라인 **대부중개사이트** 등을 통한 **피해확산 우려**도 있는 상황
 -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 양성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,
 불법대부계약·추심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구제에 어려움
 - ※ **대통령**께서는 **악질적 불법추심**을 전제로 한 **대부계약의 효력은 부인**되어야 한다고 말씀('23.11.9, 불법사금융 간담회)
 - 특히,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
 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 신종 피해사례도 지속 발생
 - * 피해자 다수(78.5%)가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불시금 접촉(광고문자(18.9%), 전단자명합(12.3%) 등
- □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**대부업권의 영업환경 악화**, **영세업자들의 불법영업** 등으로 대부업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중
 -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, 낮은 진입규제로 인해 영세대부업
 난립 우려*와 관리감독에 애로사항** 발생
 - *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 : (개인) 1천만원, (법인) 5천만원
 - ** '23년말 현재 총 대부업체수: 8,597개(지자체 등록 7,628개), 일본 1,548개
 - ➡ 악질적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,대부업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

참고

그간 불사금 대응방안 추진실적

- □ (자금수요 대응) 신규상품 출시^{*}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('22년 9.8조 → '23년 10.6조)
 - * 최저신용자특례보증('22.9월 출시), 소액생계비대출('23.3월 출시) 등
 -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*('24.6월)을 통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지원
 - * 1)은행·우수대부업권 실무협의체를 구성('24.2월~)하여 자금공급을 유도 2)우수대부 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(2회/1년)근거 마련('24.6월)
- □ (접근성 차단) 온라인사이트 등을 통한 경고·안내,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강화 등 서민층이 불사금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
 - 대부중개사이트 소비자보호조치*('23.2월~), 검색포털서 대출 관련 키워드 검색시 불사금 경고 및 정책서민금융 안내조치**('23.10월~)
 - * 제3자 개인정보판매중단("23.2월),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 경고문구 팝업게시("23.8월) 등
 - ** 네이버.카카오에서 긴급대출급전 검색시 불법사금융 예방, 정책서민금융 등 최상단 노출
 - 과기정통부에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증지 요청을 수사기관· 금감원 뿐 아니라 서금원도 가능토록 추가('23.6월,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)
- □ (대모폰·대모통장 대응) 보이스피싱·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· 수단인 대포폰·대포통장 차단 강화('22.9월, 보이스피싱 대책)
 - 1인당 개통가능한 회선 150개 → 3개 축소('22.10월), 대포폰 범죄이력자 휴대폰 개통 1년간 제한('22.12월)
 - 금융거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시 계좌개설, 이체·송금· 출금한도를 제한토록 근거마련(*24.2월,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)
- □ (단속 · 처벌) 범정부 TF를 통해 「불사금 집중단속기간」 운영(~'24.10월)
 - 금감원·지자체·경찰·금보원 합동 대부중개사이트 점검('23.4월, '24.2월)
 - 금감원·대부협회 합동 불법대부광고 특별점검 실시('23.6~10월)
- □ (피해구제 강화) 채무자대리인 적극 운영('24.1월 운영방안* 발표),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('24.2월~, 금감원)
 - * 1)피해사실 확인시 상담확인서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, 2)금감원·법구공 연계를 통한 지원사례 선제적 발굴, 3)피해회복을 위한 소송대리 적극 지원 등

Ⅱ. 대부업 및 불사금 현황

1 대부업 현황

- □ 대부업은 1·2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**서민·취약계층에 대해 자금공급 기능**을 수행중
 - 대부업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% 비중은 약 65% 수준이며,
 1년 이내 상환하는 생활비 목적의 대출비중이 큼
- □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 속에서 최근 고금리 상황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, 연체율 증가 등으로 대부업 시장은 위축 추세
 - '23년말 현재 대부업체(8,597개), 대출잔액(12.5조원), 이용자수
 (72.8만명) 모두 감소되고 있음
 - * 대부업체수(개): ('20말) 8,501 → ('21말) 8,650 → ('22말) 8,818 → ('23말) 8,597 대출잔액(조원): ('20말) 14.5 → ('21말) 14.6 → ('22말) 15.8 → ('23말) 12.5 이용자수(만명): ('20말) 138.9 → ('21말) 112.0 → ('22말) 98.9 → ('23말) 72.8
 - '23년말 현재 대부업체의 평균 조달금리는 연 7.4% 수준이며,
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(원리금 연체 30일 이상)은 12.6% 수준
 - * 차입금리(%): ('20말) 5.6 → ('21말) 5.5 → ('22말) 6.3 → ('23말) 7.4 연 체 율(%): ('20말) 8.3 → ('21말) 6.1 → ('22말) 7.3 → ('23말) 12.6
- □ 대부업 양성화라는 대부업법 제정취지에 따라 대부업 **진입장벽이 낮게 설정*되어 영세한** 대부업체의 **난립과 불법영업** 발생 우려
 - *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: 자기자본 요건이 법인 5천만원, 개인 1천만원 이상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: 자산규모 100억 초과 법인, 자기자본 3억원 이상
 -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전체 대부업체의 88%인 7,628개이며,
 약 16%는 자기자본요건을 미충족, 23%는 대부잔액이 없음
 - 현행 대부업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은
 영세업자의 불법영업 및 불법사금융 연결통로로 지적되고 있음

- □ 그 동안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나 불사금 피해는 꾸준히 발생중
 - '23년중 불사금 피해신고(금감원)는 12,8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**24.5% 증가***하였고, **단속건수**(경찰청)도 **1,404건****으로 증가추세
 - * 불사금 피해신고(건): ('20) 7,350 → ('21) 9,238 → ('22) 10,350 → ('23) 12,884
 - ** 불사금 검거 및 인원: ('22) 1,179건, 2,073명 → ('23) 2,195건, 2,195명
- □ 최근 불사금 특징으로 **피해유형이 다양화·악성화**되고 있으며, **온라인**을 통해 접촉·확산되는 경향이 있음

< 불사금 유형 >

- 이용자의 나체사진·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에게 송부하거나 **가족·친구·직장동료 등에게 대신 변제**하라고 요구 (성착취, 지인추심)
-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 명인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불법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령 (내구제대출)
- 인터넷 대부사이트를 통해 불사금업자를 등록 대부업자로 오인하여 대출 받거나 **개인정보**가 불사금업자에게 유출
- □ **불사금 증가원인**으로 등록 대부업 **영업위축**, 불사금에 대한 **인지** 부족, 온라인 이용확대, 낮은 처벌수준 등이 지적되고 있음
 - ㅇ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2금융권 및 대부업권의 자금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대부이용자들이 불사금으로 유입
 - 피해자의 다수(78%)가 **불사금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**하였으며, 온라인을 통해 쉽게 불사금업자를 접촉 ('23년 채무자대리 실태조사 결과)
 - o 불사금업자의 최고금리 위반, 미등록 영업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예방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

Ⅲ. 개선방향

〈 추진 목표 〉

◈ 서민·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, 대부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안전한 민생금융 환경 구축



추진 전략

세부 추진 과제

- 1. 불법사금융 인식 제고
- ①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
- ② 불법사금융 사전판별 수단 제공
- ③ 국민 대상 불사금 주의 안내 강화
- 4 불법대부 대포폰 및 전화번호 차단
- 2. 온라인 대부중개업 규율강화
- ① 대부중개 정의 명확화
- ② 지자체→금융위 등록 및 등록요건 강화
- ③ 대부중개 사이트 사후관리 강화
- ④ 불법목적의 개인정보 **제3자 제공금지**
- 3. 지자체 대부업 제도개선
- ① 대부업 자기자본요건 강화
- ② 대부업체 대표의 결직금지 의무부과
- ③ 현장 실태조사 강화
- ④ 지자체 관리감독 **역량 강화**
- 4. 불법대부 처벌 강화
- ① 형사처벌 기준 강화
- ② 과태료 등 행정제재 기준 강화
- ③ 불법사금융업자 금융거래 제한
- 5. 불사금 피해자 구제 강화
- 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
- ② 불법사금융업자 범죄이득 제한
- ③ 채무자대리인 사업 지속 운용
- 6. 대부업 규제 합리화
- ① 대부업 **퇴출·재진입 규제강화**
- ② 대부업자 총자산한도 합리적 조정
- ③ 우수대부업 제도 근거마련
- ④ 갱신계약에 대한 **설명의무 완화**
- 5 계약서류 보관 및 반환의무 신설

〈 추진 체계 〉

◈ 범정부 「불법사금융 척결 T/F」 등을 통해 추진·점검

Ⅳ. 세부방안

1 불법사금융 인식 제고

1 미등록대부업자 →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

- □ (현행) 대부업법상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자를 '미등록 대부업자'으로 규정
 - 법률상 '미등록 대부업자'라고 규정됨에 따라 불사금업자를
 '대부업자'로 표기하여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초래
- □ (개선방안)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'불법사금융업자'로 변경 (☞ 「대부업법」개정)
 - *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닐 경우 '대부' 명칭사용을 금지 처벌(징역 3년이하)중인 점 등 감안

2 시사전판별 수단 제공

- □ (현행) 불사금 이용자의 대다수는 불사금인지 모르고 이용하거나,
 불사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*하여 피해가 증가
 - * 피해자의 대다수(약 78%)는 불법사금융임을 인지 못하고 이용, 단순 편리하다는 이유로 불법사금융을 이용(63.2%)한 경우 다수 ('23년 채무자대리 실태조사)
- □ (개선방안) 등록대부·불사금업자 판별수단 제공 확대
 - o 대부중개사이트 內 '등록대부업체 조회^{*}' 사이트 링크 게시 유도
 - * 등록대부업체(금융위/지자체)인지 여부, 전화번호, 소재지 등 조회 가능
 - 금감원 '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' 시스템을 통해 대부업자가
 '우수대부업자'인지 간편히 확인 가능토록 정보 제공도 확대

3 국민 대상 불사금 안내 강화 등 사전인식 제고

- □ (현행) 정부·유관기관 위주로 불사금 주의사항을 홍보 중이나, 보다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필요
- □ (개선방안) 통신사의 통신요금고지서, 대부중개사이트 등을통해 불사금 주의사항을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
 - 통신이용 고객 대상으로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사금 위험성 집중 안내 (과기정통부·통신사 협의)
 - 이 대부중개사이트 內 '대출문의 게시판' 이용자에게 불사금 주의
 사항을 안내*할 수 있는 근거마련(☞「대부업법」개정)
 - * 현재 대부중개사 협의회(민간 자율기구) 소속 일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中

4 불법대부 대포폰 및 전화번호 차단

- □ (현행) 대부업법상 검·경, 금감원·서금원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증지 요청을 과기부에 할 수 있으나,
 - ㅇ 국민들의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신고근거는 미비
 - 불법대부광고가 아닌 불법채권추심·계약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직접 이용된 대포폰은 차단 및 처벌근거가 부족
- □ (개선방안) 불법대부 전화번호 신고근거 마련 및 대포폰 차단
 -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근거를 마련하고 온·오프라인 신고 절차·서식 마련 (☞ 「대부업법」 및 「대부업법 시행령」 개정)
 - 금감원·서금원 등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범위도 '불법대부 광고'에서 불법추심 등 '불법대부 전반'으로 확대 (☞ 「대부업법」개정)
 - 미등록대부, 불법채권추심 목적의 대포폰 개설·이용행위를 금지 및 처벌(3년이하 징역, 벌금 1억원 이하 부과) (☞ 「전기통신사업법」개정)

2 온라인 대부중개업 제도개선

1 대부중개 정의 명확화

- □ (현행) 대부중개사이트의 영업행태가 '대부중개' 행위에 해당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*, 대부중개사이트 책임 부여 등에 한계
 - * 대부업법에는 '대부중개'에 대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, 대부중개사이트는 대출알선 행위는 광고에 불과하다고 주장
- □ (개선방안) 現 대부중개사이트의 영업행위가 '대부중개'에 해당 하도록 정의규정 마련 (☞ 「대부업법」개정)
 - "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
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"을 대부중개로 정의

2 금융위 등록의무 법제화 및 등록요건 강화

- □ (현행) 대부중개사이트는 지자체 등록 대상이나, 지자체의 관련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지속 제기
- □ (개선방안) 등록의무를 금융위로 상향하고 등록요건을 강화
 -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(금감원 위탁)로 상향*하여 금갂워이 직접 감독·검사 업무 수행
 - * 다만,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지자체 등록 유지
 - 「금소법」상 대출비교플랫폼의 등록요건에 준하는 수준의 인적· 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*
 - * 자기자본, 전산·보안설비,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등
 - 등록시 금융보안원 심사필을 제출하도록 규율하고, 등록요건 未유지시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부과

3 대부중개사이트 사후 관리 강화

- □ (현행) 「대부업법」에 따라 대부중개업자는 업무보고서를 연 2회 제출하고 있으나, 오프라인 대부중개업 특성 위주로 작성
- □ (개선방안) 온라인 대부중개 특성을 반영한 업무보고서 제출* 의무를 신설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(☞ 「대부업 감독규정」 개정)
 - * 광고대행 계약건수 및 수수료 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규율

4 불법목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금지

- □ (현행)「대부업법」에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개인정보 유용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不在
 - 대부중개사이트나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사금
 업자에 판매하여도 처벌이 어려워*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
 - * 「개인정보보호법」상 개인정보를 대부중개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가능
 - ※ 대부중개사이트는 "이용자를 위한 실시간 대출상담 서비스, 민원업무처리, 통계학적 분석, 마케팅 활용 및 홍보문자, **개인정보 판매**" 등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였으나, **"개인정보 판매"는 이용목적에서 제외('23.2월)**
- □ (개선방안) 「대부업법」에 개인정보 유용에 대한 제한 근거 마련
 - 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**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은 경우**라도 **대부제공·대부중개 목적 外 사용**(개인정보 판매 등)을 **처벌** (징역5년·벌금2억이하)
 - 아울러, 누구든지 불사금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 제공·보관·전달·유통을 처벌(징역5년·벌금2억이하)
 - * 유사 입법례 : 전자금융거래법(§6의3, §49④)은 범죄목적 또는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·보관·전달·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(징역 5년·벌금 3천만원)

3 지자체 대부업 제도개선

1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

- □ (현행) 대부업 등록요건이 낮게 설정*되어 있어 영세대부업 난립우려 및 불법영업 소지 증가
 - * <자기자본> (지자체) 법인 5천만원, 개인 1천만원 / (금융위) 3억원 이상
 - 아울러, 등록신청 시에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후, 등록완료되면 자기자본을 인출하는 꼼수 등록도 횡행
 - * 개인 대부업자 11.3%가 1천만원 미충족, 법인 대부업자 4.1%가 5천만원 미충족
- □ (개선방안) 지자체 대부업자의 등록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*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 부과 (☞ 「대부업법」및 시행령 개정)
 - * 예) **(개인)** 1천만원 → **1억원**, **(법인)** 5천만원 → **3억원** / (**日**) **5천만엔** (약 4.3억원)
 - 또한, 명의이전 없이 등록증을 "대여하는 행위" 뿐만 아니라 등록증을 "양수·도하는 행위"도 금지*하여 등록증 관리를 강화
 - * 등록증 대여(現 징역 3년이하, 벌금 3천만원 이하)와 동일하게 처벌

2 | 겸직금지의무 부과

- □ (현행) 금융위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 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 운영하는 사례(쪼개기 등록) 존재
- □ (개선방안) "쪼개기 등록"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는 타 대부업체의 임직원 겸직 제한 (☞ 위반시 영업정지(기관), 과태료 5천만원 이하(기관·개인) 부과)
 - 영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총괄사용인도 해당 영업소에만
 상주하여 업무를 관장하도록 타 대부업체 겸직 금지

3 현장 실태조사 강화

- □ (현행)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관내 대부업자에 대해 연 1회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연 2회 실태조사 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
 - 지자체의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면조사 등 형식적인 조사*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
 - * 지자체 대부업체(7,628개)의 약 10%(748개)는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
- □ (개선방안) 각 지자체의 대부업 현장검사와 실태조사 강화
 - 지자체의 연간 대부업 검사계획 수립시 현장검사 계획을 포함
 하도록 하고, 실태조사시 현장점검을 병행*하도록 지도
 - * 지자체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금감원 지방사무소(11개소) 협조 검토
 - 실태조사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대부업체에 대해 **과태료**를 **처분하도록 유도** (대부업법상 과태료 법인 600만원, 개인 200만원)

4 지자체 관리감독 역량 강화

- □ (현행) 지자체의 인력부족, 겸업·순환보직 등에 따른 전문성 부족* 등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·감독에 애로
 - *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공무원 1인당 평균 83개 업체(2,072개/25자치구)를 담당하고 있으며, 대부업 이외 5개 이상의 다른 업무를 같이 수행('23.12월)
- □ (개선방안)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여건 조성
 - 금감원이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관리·감독 교육*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
 - *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워크샵('24.7.15(월)) 교육 등
 -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관심을 갖고 대부업자를 관리·감독할
 수 있도록 지방정책협의회* 등을 통해 협조요청
 - * 행안부 장관(주재), 및 전국 17개 시·도 부단체장 참석

4 불법대부 제재·처벌 강화

1 처벌기준 강화

□ 불사금업자의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

	현 행	개 선(案)
미등록 영업	•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	•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
정부·금융기관 사칭	• 과태료 5천만원 이하	• <u>5년 이하 징역 또는</u> 2억원 이하 벌금
최고금리 위반	•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	• <u>5년 이하 징역 또는</u> 2억원 이하 벌금
대부업 등록증·명의대여	•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- 등록증 대여자만 처벌	• <u>5년 이하 징역</u> 또는 <u>2억원 이하</u> 벌금 + <u>등록증 대여 받은자, 매매자 처벌</u>
불법 목적의 개인정보 불법판매·유통	-	• <u>5년 이하 징역</u> 또는 <u>2억원 이하</u> 벌금

2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기준 정비

- □ 대부업법상 허위상호, 계약기재의무 위반 등의 과태료 기준 상향
 - 현행 법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(약 10%)으로 되어 있는
 과태료 기준을 대폭 상향*(법정 상한액 대비 30% 이상)
 - * 예) 허위상호(법정 상한액 5,000만원) : (현행) 600만원 → <u>(개선) 최대 3,000만원</u>
- □ 대부업자가「채권추심법」위반시 실효성 있는 제재*가 가능토록 기관경고·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 (☞ 「대부업법」개정)
 - * 현재는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·영업정지 등 조치만 가능
- □ 경미한 위반행위(예 : 대부업 교육 미이수 등)에 대해 대부이용자 불편 등 고려하여 '영업정지' 대신 '대체과징금' 제도 도입
 - * 은행·저축·여전·자본시장법 등은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관련 제도 기도입

3 불법사금융업자 금융거래 제한

- □ (현행) 보이스피싱*과 달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(비대면 금융거래) 등을 제한하지 못해 불법영업 피해 반복
 - *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에 따라 ^①보이스피싱 유죄판결 선고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3~5년 제한, ^②보이스피싱 목적 금융거래시 계좌개설, 이체·송금·출금한도 제한
- □ (개선방안)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계좌개설, 전자금융거래제한 등을 도입 (☞ 「대부업법」개정)
 - 불법사금융 범죄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실이 확인될
 경우 계좌개설, 이체·송금·출금한도를 제한가능토록 근거 마련
 - * 예) 대부업 영업목적으로 다수의 법인계좌 개설시 대부업 등록증 등 증빙서류 요구 → 증빙서류 미제출시 신규 계좌개설 등 제한
 - 불법사금융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3년(벌금형)~5년(징역형) 제한

5 불법대부 피해구제 강화

1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

- □ (현행) 불법채권추심 등을 전제로 체결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
 민법 제103조* 일반법리 外 무효를 주장할 근거 不在**
 - * (「민법」제103조)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
 - ** 현재까지 민법 제103조에 근거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판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
- □ (개선방안)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률상근거 마련 (☞ 「대부업법」개정)
 - ¹⁾성착취 추심 등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, ²⁾인신매매, 신체상해, ³⁾폭행·협박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등은 원금·이자 무효화 추진

2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

- □ (현행)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가 처벌되더라도 최고금리(20%)수준의 수익은 인정됨에 따라 재범행 동기로 작용할 소지
- □ (개선방안)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을 제한 (☞ 「대부업법」개정)
 - 불법사금융업자가 **대부계약 시 상사법정이율***(6%)을 **초과**하는 이자는 무효화
 - * 금전대차 등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 약정이율이 없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을 시 적용되는 상법상 이자율(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%)
 - 불사금업자도 등록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대부업법·채권추심법 등 위반사항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*하도록 근거 마련
 - *「대부업법」상 등록대부업자 外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도 1)최고금리 제한, 2)미등록대부업 광고 금지 등의 규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 감안

3 채무자대리인 제도^{*} 지속 운용

- * **불법 채권추심피해**(우려)가 있거나 **법정 최고금리**(연 20%) **초과 대출**을 받은 **서민·취약계층**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**무료 법률서비스**
- □ (현행) 금년 역대 최대 예산('23년 8.9억 → '24년 12.6억)을 확보한 만큼 피해우려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소송대리를 적극 지원중
 - '금감원 상담확인서'만으로 별도 입증자료 없이 지원 가능토록 개편('24.2월)하고 채무자대리·소송 수요를 적극 발굴
 - 채무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, 지인 등 채무자의 관계자*
 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('24.7월)
 - * 불법추심 유형 중 '지인추심' 유형 다수(72%) ('23년 채무자대리 설문조사)
- □ (개선방안) 채무자대리인 제도 실태조사,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제도개선 사항*등 발굴·검토
 - * 現 지원기간(최초 6개월+연장 6개월) 및 연장가능 횟수(1회) 추가 확대 검토 등

6 대부업 규제 합리화

1 대부업 퇴출·재진입 규제 강화

- □ (현행) 등록심사 및 부적격 대부업자 시장 퇴출 관련 제도 미흡
 - 부적격 대부업자*에 대한 등록취소만 가능하고 직권말소 근거가 없어, 시장 퇴출 지연**에 따른 불사금 연계 등 소비자 피해 우려
 - *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거나, 소재지 불명 또는 등록요건 미유지 업체 등
 - ** '등록 취소요건 확인 \rightarrow 검사절차 진행 \rightarrow 금감원 제재 건의 \rightarrow 금융위 의결'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
 - 또한, 대부업법상 자진 폐업한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재등록*이
 가능하므로, 제재면탈을 위해 대부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우려
 - * 現 대부업법상 자진폐업은 1년간, 등록취소는 5년간 재등록 불가능
- □ (개선방안) 대부업 전반의 역량, 신뢰제고를 위해 "퇴출 → 재진입 제한"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 (☞ 「대부업법」개정)
 -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시·도지사, 금융위(금감원 위탁)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하여 부적격자 즉시 퇴출*
 - *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만 확인하면 즉시 직권말소 처분 가능 (자본시장법(투자자문업자, 투자일임업자 등 대상) 기도입)
 -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확대(1년→3년*) 하여
 부적격 대부업자의 규제회피 등을 통한 시장 재진입 차단
 - * 여전사의 경우 폐업에 따른 등록취소시 3년간 재등록 금지(여전법§6) 중인 점 등 감안

2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합리적 조정

- □ (현행)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중이나,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한이 없음
 -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
 제고하여 규제회피 목적의 지자체 등록 방지 필요
 - 금융위 등록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
 차원에서 총 자산한도 규제 한도 완화 필요
- □ (개선방안)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까지 확대하고,우수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상향 조정*
 - * (지자체 등록) 규제없음 → <u>10배 (신설)</u> (금융위 등록업자) 10배 (현행유지), (우수대부업자) 10배 → 12배

3 │ 서민금융 우수대부업 제도 근거 마련

- □ (현행) 우수대부업자* 지정을 위한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감독규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, 제도 영속성 및 인센티브 부여에 한계
 - *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대출잔액 70% 이상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제도
- □ (개선방안) 우수대부업자 지정 법적근거 마련 (☞ 「대부업법」개정)
 - 금융위가 지정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한해 **상호에 '서민** 금융 우수'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칭시 처벌근거 마련
 - 우수대부업자 세부 진입·유지요건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

4 갱신계약에 대한 설명의무 완화

- □ (현행)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계약서 교부 및 계약 내용*을 설명(설명의무)하도록 규정
 - * 대부업자 명칭·주소지, 계약일자 및 대부금액 등
 - 다만, 단순히 갱신계약에 대해서도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
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 가중
- □ (개선방안) ^①대출조건* 변경없는 단순 갱신계약으로서, ^②소비자가 설명의무 생략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설명의무 면제
 - * 이자율 변경, 대출금액 변동 등
 - ※ (유사사례) 은행업감독규정(§89)에 따라 ¹⁾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²⁾소비자가 설명의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은행은 설명의무를 생략 가능

5 계약서류 보관의무 및 반환의무 신설

- □ (현행)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(보관의무)하고 있으나,
 - 대부채권이 **양수・양도 되는 경우** 채권을 **양도받은 대부업자**도 **보관의무가 적용**되는지는 불명확
 - * 유권해석을 통해 채권을 양수받은 대부업자도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내('12.7월, '17.1월)하고 있으나, 이를 집행할 법적 근거 부족
 - 대부업자의 원본 계약서류 반환의무도 부재하여 소비자의
 소송 등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
- □ (개선방안)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·양수한 경우에도 대부 업자에게 계약관련서류 보관의무 부과(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)
 - 민법* 등 고려, 채무변제 후 채무자(대리인 포함)가 반환 청구시 대부업자의 계약서류 원본 반환의무 부과(위반시 과태료/영업정지)
 - * 민법 제475조(채권증서반환청구권)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